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
[시행 2008.3.6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, 2008.3.6, 타법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2.28>

제2조 (신고)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(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다. <개정 2007.12.13, 2007.12.28>

제3조 (변경신고)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28>

제4조 (신고필증의 교부)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  
②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(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. <개정 2007.12.13>

제5조 (신고상황의 보고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(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13>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제6조 (간행물의 제출)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서에 해당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"발행한 때"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.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7.12.28>  
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제7조 (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의 신청 등)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목록 비교란에 조건부 수입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) ①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청구금액 산정내역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공공단체의 범위)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5조제5항제1호에서 "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"란 공공목적에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6>  
[전문개정 2007.12.28]

제10조 (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간행물 유통업무 관련 실·국장이 된다. <개정 2007.12.28, 2008.3.6>  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07.12.28, 2008.3.6>  
1. 출판·인쇄·서점·출판유통·저작권 또는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단체,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  
2.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 
3. 출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

제11조 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 및 단체,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한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.

제12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  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 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 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3.6>

제16조 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3.6>

제17조 (운영세칙)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8조 (증표)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
제19조 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28>

부칙(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3> 까지 생략

<24>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"문화관광부령"을 "문화체육관광부령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, 제16조 본문 중 "문화관광부장관"을 각각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·제2항제2호, 제15조 중 "문화관광부"를 각각 "문화체육관광부"로 한다.